

수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목 : 토지보상 청원에 관한 의회 의견서 채택안

지난 '95. 5. 24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23번지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김기석 이사장이 청원하여 본 의회에 접수된 「제천시 의림동 10 - 17과 의림동 213 - 18번지 토지의 보상에 관한 청원」의견이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청원 내용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조사 검토한바 당의회의 의견을 지방자치법 제 5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채택하고자 발의 합니다.

별첨 : 토지보상 청원에 관한 의회 의견서(안) 1부.

등록번호	보존년수	경 년 수	발 급 일	등 록 처
기 관 자	보 조 기 관	결 재 자	기 관 자	보 조 기 관
기관자	보조기관	결재자	기관자	보조기관
기관자	보조기관	결재자	기관자	보조기관
기 관 자 	보 조 기 관 	결 재 자 	기 관 자 	보 조 기 관

'95. 5. 26

발의자 김영범 의원외 4인

토지보상 청원에 관한 의회 의견서 채택안

의안번호 164

제안년월일 : 1995. 5. 26
제 안 자 : 김영범 의원외 4인

1. 제안경위

- 가. 청원자 :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23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이사장 김지석
- 나. 소개의원 : 최경화 의원
- 다. 청원 접수일 : '95. 5. 24
- 라. 청원채택 : '95. 5. 25일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2. 제안이유

- 가. 청원인과 관계인들의 어려움 해결
- 나.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재산권 보호

3. 주요골자

- 가. 위 청원전증 청전동 소재토지와 교환 요청건에 대하여 도시계획
법 제82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의 규정에 저촉되어 불수리 사항임.
- 나. 의림동 10 - 17번지의 1필지의 토지보상 요청건에 대하여도
공공용물의 관리 책임기관인 제천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
재정범위내에서 적의 처리 요망.

토지보상청원에 따른 의회 의견서채택의건 제안설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것은 제6회 제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의 「토지보상에 관한 청원」 건이 제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채택되었기 본 의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청원의 내용과 법률적 검토는 1차 본회의시 청원소개와 질의 답변시 상세히 설명되었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청원건증 청전동 소재 토지와 교환 요청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와 제천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의 규정에 저촉되어 불수리 사항입니다.

다만, 청원의 첫째항인 의림동 10 - 17번지의 1필지의 토지보상 요청건에 대하여는 공공용물의 관리 책임기관인 제천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재정범위내에서 적의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토지보상청원에 따른 의견서(안)과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명하신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보상 청원에 따른 의견서(안)

지역발전과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5. 5. 24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23번지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김지석 이사장이 청원하여 본의회에 접수된 「제천시 의림동 10 - 17과 의림동 213 - 18번지 토지의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이 제6회·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청원내용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조사 검토한바 당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본 청원의 건이 청원인과 관계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의 요지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의 청원요지는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바 첫째, 현재 소방도로로 사용중인 제천시 의림동 10 - 17번지 (답 1,002㎡)와 의림동 213 - 18번지 (전 378㎡) 소재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것과

둘째,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면 위 토지와 시유지 [제천시 청전동 4 - 74(전 55㎡)번지와 청전동 4 - 77(전 922㎡) 및 청전동 4 - 88 (임 2,404㎡)와 교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2. 의회의견

위 청원건증 청전동 소재 토지와 교환 요청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의 규정에 저촉되어 불수리 사항입니다.

다만, 청원의 첫째항인 의림동 10 - 17번지의 1필지의 토지보상 요청건에 대하여는 공공용물의 관리 책임기관인 제천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재정범위내에서 적의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1995. 5. 27

제 천 시 의 회

제천시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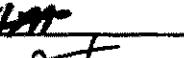
우(390-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110 / 전화 (0443) 40-6509(행) / 전송 45-6411

문서번호 의회 02000 - 2/3

시행일자 '95. 5. 29.

수신 제천시장

참조 기획담당관

취급		의장
보존		
부의장		
국장		
전문위원		
계장		기안 

제목 토지보상 청원서 이송

1995. 5. 24.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23번지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김지석 이사장이 청원하여 본의회에 접수된 「제천시 의림동 10-17과 의
림동 213-18번지 토지의 보상에 관한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별첨과 같이 이송하오니 처리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별첨 : 청원서 1부.

의회 의견서 1부. 끝.

제천시의회 의장

토지보상 청원에 따른 의견서

지역발전과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5. 5. 24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23번지 재단법인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김지석 이사장이 청원하여 본의회에 접수된 「제천시 의림동 10 - 17과 의림동 213 - 18번지 토지의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이 제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청원내용의 타당성 및 문제점을 조사 검토한바 당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오니 본 청원의 건이 청원인과 관계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의 요지

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의 청원요지는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바 첫째, 현재 소방도로로 사용중인 제천시 의림동 10 - 17번지 (답 1,002㎡)와 의림동 213 - 18번지 (전 378㎡) 소재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것과

둘째, 위 토지에 대한 보상이 어려우면 위 토지와 시유지 [제천시 청전동 4 - 74(전 55㎡)번지와 청전동 4 - 77(전 922㎡) 및 청전동 4 - 88 (임 2,404㎡)와 교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2. 의회의견

위 청원건증 청전동 소재 토지와 교환 요청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와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의 규정에 저촉되어 불수리 사항입니다.

다만, 청원의 첫째항인 의림동 10 - 17번지의 1필지의 토지보상 요청건에 대하여는 공공용물의 관리 책임기관인 제천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시재정 범위 내에서 적의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5. 27

제 천 시 의